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2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10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강석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
김원태, 문성호, 박영한,
박춘선, 송경택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종태, 이효원, 최민규,
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, 문화예술적 소질 및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보장하여”를 “보장·확대하여”로, “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”를 “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<u>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보장·확대</u>하여 ----- ---- <u>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</u>----</p>